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05

발의연월일: 2022. 7. 22.

발 의 자:김용판·박덕흠·김성원

박대수 · 서일준 · 박성민

구자근 • 이주화 • 유경준

조수진 · 김예지 · 권명호

이종성 · 정점식 · 최춘식

김상훈 • 이달곤 • 김학용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민간기업과 농어업인과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목적의 신용 보증기금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복지근로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 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	
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다음 각	2024년 12월 31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	
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	
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